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6-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9월 0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 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계속 국외거주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중인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였기에,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인 병역의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국내 주소
오준일	****.**,**.	서울특별시 노원구

○ 행정 처분내용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2026. 8. 27.)
- 귀국 명령 및 귀국기한(2026. 11. 26.까지 귀국) 지정
- * 귀국기한 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02-820-4335)